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40

발의연월일: 2022. 4. 7.

발 의 자: 송석준 · 김학용 · 정우택

김상훈 • 박성민 • 황보승희

김선교 · 임종성 · 유경준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밀화된 도심의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개발 등 생활권역이 광역화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광역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보다 효과적이고 체감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도시권별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높은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광역교통 혼잡을 집중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이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함(안 제7조의10 신설 및 제8조제2항제7호).

법률 제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0(광역교통축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별 교통 혼잡 해소 필요성이 높은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축을 지정하거나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광역교통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 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축의 지정 및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조의10에 따른 광역교통축의 지정 및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개 정 안 제7조의10(광역교통축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별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높 은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 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 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축별 광

-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 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6. (생 략)
 - 7.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 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 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신 설>

③ (생략)

-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7조의10에 따른 광역교통 축의 지정 및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 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u>으로 정하거나 다른</u>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 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 ③ (현행과 같음)